

제정일	개정일	개정차수	분류번호	총페이지
2007. 04. 11	2025.04.30	5	TK-A-102	9

이사회 규정

ESG지원팀

2025. 04. 30

제1장 총 칙

제1조 목적

이 규정은 태광산업주식회사 이사회(이하 “이사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적용범위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직무와 권한

- ① 이사회는 부의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고 받는다.
- ③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기타 경영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.

제4조 공동대표 규정

(삭제)

제2장 구 성

제5조 구성

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6조 의장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 다만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관 제26조에 규정된 순으로 한다.
- ② 의장은 의장직무를 타 대표이사를 지명하여 위임할 수 있다.
- ③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의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27조에 규정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 의

제7조 종류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8조 소집권자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 유고 시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 소집절차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- ③ 제 1항과 제 2항의 소집통지는 문서 또는 구두로 하되, 비상근이사에게는 사전에 등록된 모사전송기(FAX) 또는 E-mail 을 통하여 할 수도 있다.

제10조 결의방법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 부의사항

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.

제12조 보고사항

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.

제13조 이사회 내 위원회

-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이사회는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.
- ④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- ⑥ 상법 제386조제1항(이사의 결원), 제390조(이사회의 소집), 제391조(이사회의 결의방법), 제391조의3(이사회 의사록) 및 제392조(이사회의 연기 및 속행)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

제14조 관계인의 출석

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5조 의사록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의사록은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불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4장 보 칙

제16조 간사

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17조 개정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제18조 전문가의 자문

이사회 또는 이사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.

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(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)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장 선임
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3) 재무제표의 승인
- (4) 정관의 변경
- (5) 자본의 감소
- (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(7) 주식의 소각
- 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
- 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10) 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11)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12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3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(14) 주식배당 결정
- (15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
- (16) 이사의 보수
- (17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2) 대표이사, 각자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3)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에 대한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 직위의 보·면
- (4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제정 및 개폐
- (5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- (6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
- (8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9)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
- (10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- (11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(1) 출자 및 투자에 관한 사항

- 가. 건당 자기자본의 1,000 분의 25 이상의 출자(타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함. 이하 같음) 또는 출자지분 처분
- 나. 건당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, 시설증설, 별도 공장의 신설 및 폐지

(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
- 가. 회사의 경영, 재산 등에 중요한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취득, 양수 또는 양도
- 나. 회사의 경영, 재산 등에 중요한 자본도입, 기술도입, 기술이전 또는 기술제휴에 관한 계약의 체결, 중도해지 또는 연장
- 다. 기타 회사의 경영,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, 중도해지 또는 연장

(3) 결손의 처분

- (4) 신주의 발행
- (5) 사채의 모집
- (6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7) 전환사채의 발행
- (8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9) 명의개서 대리인의 결정 및 변경
- (10) 일정액 이상의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

- 가. 건당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차입
- 나. 건당 자기자본의 1,000 분의 2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
- 다. 건당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,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
- 라. 건당 자기자본의 1,000 분의 25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

(11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내부거래공시대상 행위에 대한 사항

4. 이사회 및 이사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(2) 이사의 경업 승인

5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(별표 2)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

1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2. 대표이사(또는 내부회계관리자)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
3.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
4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
5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6.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결과
7.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, 그 내용